

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974, 975 |
|----------|----------|

2019년 09월 04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08. 07. 서울특별시청 제출
2. 회부일자 : 2019. 08. 13.
3. 상정일자 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9년 09월 04일 상정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강병호 복지정책실장)

1.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- 가. 서울광역자활센터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의10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 중인 기관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
- 나. 현 수탁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- 가. 영등포역 일대는 대표적인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 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음.
- 나.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,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
- 다. '19.12.31.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“시립 영등포보현의집”의 기능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, 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(행정사무위탁)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(광역자활센터)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(수탁기관 선정)
- 추진 필요성
 - 서울지역 30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, 자활근로사업단·자활기업에 대한 재무경영 컨설팅과 아이템 개발 등을 지원하고,
 - 2개 자치구 이상의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홍보·관로개척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
 -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촉진 관련 전문성과 지역사회 복지사업·자활 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자활기업 창업·지원
-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·창업 지원 및 알선
-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-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
-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: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, 3층
- 이용대상: 서울시 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모집단에 선정된 차상위계층, 기초수급단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0. 02. 07 ~ 2023. 02. 06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 적격자 심의

사. 소요예산 : 1,136백만원 (일반회계 548백만원 / 기금 588백만원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재위탁 공모시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생략할 수 있음.

2.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가. 위탁사무명 :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운영(신규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노숙인 종합지원센터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(수탁기관 선정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들에게 임시적인 잠자리 및 기초

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, 거리상담 활동, 응급구호, 무료 진료소 운영,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함.

-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·자립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(일시보호시설 포함)
-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, 세탁, 이·미용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
-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
-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, 주거 및 일자리 연계
- 위탁시설의 재산관리,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(수유동)
- 이용대상 : 서울시 거주 거리노숙인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5년 (2017. 01. 01 ~ 2022. 12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: 2,425백만원

-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: 2,100백만원

- 무료진료소 : 325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.

IV. 참고사항

1.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의10(광역자활센터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」 제26조의2(광역자활센터의 지정)
- 「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
- 「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2.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(노숙인종합지원센터)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2조(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V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제289회 금번 복지정책실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1건, 최초 위탁 1건 등 총 2건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¹⁾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-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※ 재위탁 · 재계약의 정의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

- 재위탁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.
- 재계약 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.

○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는 행정의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 선정, 사업 효과성 평가,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복지정책실에서 금번 제출한 성과보고서 내용에서 표시하고 있는 사업 효과성 평가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2018년도 민간위탁동의안 심의 시 지적했던 기관운영 지표와 사업운영지표상의 정성적 지수를 정량화 지표로써 표시되도록 했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없음.
-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위탁업무의 사업자 선정 시 또는 선정 이후 수탁자의 업무집행능력 및 자체 내부시설 경영능력 등을 유사 민간 운영시설과 비교하는 등의 민간위탁시설 수탁자로서 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나 전년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검토보고서로 제출되었다는 점은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.

■ 서울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점수

| 평가영역 | 평가범주 | 평가지표 | 지표배점 | 세부배점 | 득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 사무 평가 | 1. 사업인프라 | 1-1. 조직 및 인력 운영 | 5.00점 | - | 4.01점 |
| | | 1-1-1.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| | 2.50점 | 1.88점 |
| | | 1-1-2.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| | 2.50점 | 2.13점 |
| | | 1-2.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| 5.00점 | - | 3.55점 |
| | | 1-2-1.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| | 3.00점 | 2.25점 |
| | | 1-2-2.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| | 2.00점 | 1.30점 |
| | | 1-3. 사회적 가치 기여 | 12.00점 | - | 8.86점 |
| | | 1-3-1.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| | 7.00점 | 4.73점 |
| | | 1-3-2.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및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 | | 2.50점 | 2.13점 |
| | 1-3-2.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| 2.50점 | | 2.00점 | |
| | 2. 사업활동 | 2-1. 사업계획 집행수준 | 7.00점 | - | 4.88점 |
| | | 2-1-1. 사업계획의 적정성 | | 2.50점 | 1.38점 |
| | | 2-2-2.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| | 2.00점 | 1.50점 |
| | | 2-2-3.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| | 2.50점 | 2.00점 |
| 2-2.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| | 8.00점 | - | 5.95점 | |
| 2-2-1.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| | | 3.00점 | 1.95점 | |
| 2-2-2.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| | | 2.50점 | 2.00점 | |
| 2-2-3.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| | | 2.50점 | 2.00점 | |
| 개별 사무 평가 | 3. 사업성과 | 3-1. 사업성과 평가결과(합계) | 40.00점 | - | 32.72점 |
| | | 3-1-1. 광역사업 육성실적 | 20.00점 | - | 15.48점 |
| | |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| | 4.00점 | 3.20점 |
| | |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| | 4.00점 | 2.60점 |
| | | ③ 신규 자활 사업 보급률 | | 3.00점 | 3.00점 |
| | | ④ 자활근로사업단 네트워크 지원성과 (1) 자활근로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건 수 (2) 자활근로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금액 | | 4.00점 (2.00점) 2.00점 | 3.75점 1.75점 2.00점 |
| | | ⑤ 광역형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(1)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횟수 (2)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매출액 (3) 공공장터 및 판로개척 참여기업 | | 5.00점 (2.00점) (2.00점) (1.00점) | 2.93점 1.46점 0.86점 0.61점 |
| | | 3-1-2. 경영지원 및 교육지원, 저소득층 자활지원 성과 | 20.00점 | - | 17.24점 |
| | | ①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| | 4.00점 | 3.20점 |
| | | ②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| | 4.00점 | 2.60점 |
| | ③ 경영지원 실적 | 4.00점 | | 3.89점 | |
| | ④ 교육 운영 실적 | 4.00점 | | 4.00점 | |
| | 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| 4.00점 | 3.55점 | | |
| | 3-2. 대외적 우수사례(Best Practice) 성과창출 수준(합계) | 3.00점 | - | 2.55점 | |
| | 4. 지도점검 이행노력 | 4. 지도점검 이행노력 평가결과(합계) | 5.00점 | - | 3.68점 |
| | | 4-1. 지도점검 이행률 | | 2.50점 | 2.05점 |
| | | 4-2. 지도점검 이행노력 | | 2.50점 | 1.63점 |

- 서울광역자활센터는 민간위탁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수탁자 업무수행능력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에서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문제점 없는 한 연속하여 재계약·재위탁되어 장기간 수탁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 바, 이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방침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등 무사안일한 위탁 사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.
-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규 시설 및 재위탁·재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표를 표기함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성, 전문성, 투명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2 동의안 대상사무 검토

가.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-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서울지역 30개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, 자활근로사업단·자활기업에 대한 재무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.
- 2개 자치구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광역단위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홍보·판로개척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·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함.
- 현 수탁법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사무위탁을 하려는 것임.

<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>

-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, 3층(목동)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자활기업 창업·지원
 -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·창업 지원 및 알선
 -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
 -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
 -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
 - 위탁기간 : 2020.02.07 ~ 2023.02.06.(3년)
 -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,136백만원 (일반회계 548백만원, 기금588백만원)

- 서울광역자활센터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보건복지부 「지활사업안내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,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함.
- 사업범위는 ①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·창업 및 사업지원, ②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, ③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, ④자활생산물 홍보·관로개척·전시회 개최, 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 지원, ⑥기타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
- 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 초기 설립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, 사업추진전략이 계획적이며 각 사업별 목표 및 하위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짐.

- 집행부의 자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추진하고 있는 제3자 위탁사업은 없는 것으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.
- 보건복지부의 「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」 제14조(직원 등의 자격 및 임용기준)에서는 직원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, 수탁기관에서는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고, 그 외의 인력 또한 지역사회복지 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함으로써 자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구 노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 요소임.
- 다만, 집행부 자체 평가의 지적 사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서울시 회계감사 결과, 2017년에는 직급별 기준호봉 소급적용 불가로 인한 환수조치 필요,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회식 명목으로 예산집행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,
- 2018년에는 보조금 부적절 사용,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및 복무관리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. 해당 지적사항은 사업예산 집행 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들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당해 연도 실적 평가를 차년도 계획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, 그 간의 추세 및 실질적 목표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목표 설정을 하는 등 행정적 편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.

나.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- 영등포 지역은 대표적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

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.

-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만성 노숙인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.
- 서남권 7개 자치구에 산재한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필요성 등 영등포 노숙인 밀집지역인 영등포지역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·운영하여 거리노숙인 응급보호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를 목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5년간(2020. 1. 1. ~ 2024. 12. 31.) 아래표와 같이 사무위탁을 하려는 것임.

< 영등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>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(일시보호시설 포함)
 -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, 세탁, 이·미용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
 -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
 -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, 주거 및 일자리 연계
 - 위탁시설의 재산관리,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
- 시설현황 :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4. 12. 31.(5년)
-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2,425백만원
 -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: 2,100백만원
 - 무료진료소 : 325백만원

<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추진경위 >

□ 추진경위

- ▶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('12,06,08)으로 기존 상담보호센터 중 시립시설 2개소를 종합지원센터로 개편



※ '16.1월 여성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설치

▶ 영등포 일대 노숙인시설 현황

| 시설 유형 | 시설명 | 시설위치 | 건물 소유 | 시설 규모 (㎡) | 종사자 (명) | 입소자·취침 인원(명)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| | | 정원 | 현원 |
| 일시 보호 시설 | 응달샘드림인센터 | 경인로94길 6 | 법인 임차 | 490 | 10 | 150 | 106 |
| | 햇살보금자리 | 국회대로54길 41-16 | 법인 임차 | 528 | 7 | 74 | 55 |
| 자활 시설 | 시립 영등포보현의집 (일시보호시설기능 포함) | 버드나루로 24 | 시립 | 2,784 | 25 | 288 | 227 |
| | 광야홀리스센터 | 경인로100길 3 | 법인 (교회) | 810 | 7 | 79 | 57 |
| | 두레사랑의쉼터 | 버드나루로 14가길 14 | 법인 (교회) | 117 | 3 | 13 | 8 |

※ 시립 영등포보현의집은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음(종사자 4명)

- ▶ '12년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설치 못함.

| 권역별 | 관할 자치구 | 거리노숙인 ('19.5.3. 실태조사) | 관할센터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중부 및 동남권 | 용산구, 성동구, 중랑구, 광진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, 서울역인근 | 473명 | 다시서기 |
| 강북권 | 서대문구, 종로구, 마포구, 동대문구, 중구(서울역인근 제외), 은평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, 노원구 | 129명 | 브릿지 |
| 서남권 |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금천구, 구로구, 양천구, 강서구 | 89명 | 없음 |

- 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 등 예산절감을 위해 시립시설을 우선 검토한 바, 시립 자활시설인 ‘영등포보현의집’을 종합지원센터로 전환기로 함.
 - ‘영등포보현의집’은 ‘04년부터 부속시설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였으며, 겨울철·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수행기관으로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활동을 추진하였음.
- 집행부 전환운영 계획에 따르면, 현재 자활시설로 운영 중인 ‘영등포보현의 집’은 향후 ‘노숙인 종합시설’로 전환되면 현재의 자활시설 기능은 없어지고 건강정신팀을 포함한 일시보호 및 진료소로 운영될 예정임.
 - 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‘영등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등’은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음.

2019년 제4차 위원회 심의결과

| 연번 | 부서명 | 위탁 사무명 | 유형 | | 수탁기관 | 심의결과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|------|
| 8 | 자활 지원과 | 시립 영등포종합지원센터 | 시설 | 신규 (공모) | - | 적정 |

3 종합의견

- 본 위원회에 제출된 2건의 동의안은 위탁사무에 대한 신규 위탁 또는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, 각 시설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,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, 예산절감,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금번에 제출된 위탁동의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보건복지부 「자활사업안내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을 지원하고,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바,
- 보호전문기관은 자활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목적, 사업추진전략이 계획적이며 각 사업별 목표 및 하위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여짐.
- 다만, 복지정책실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표시하고 있는 사업효과성 평가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관한 관리 및 평가는 2018년도 민간위탁동의 시에 지적한 기관운영 지표와 사업운영지표상에 정성 및 정량화 지표로써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, 위탁업무의 사업자 선정 시 또는 선정 이후 수탁자의 업무집행능력 및 자체 내부시설 경영능력 등을 유사 민간운영시설과 비교하는 등 민간위탁시설 수탁자로서 수행능력을 객관적이고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.

- 복지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규 시설 및 재위탁·재계약 시 수탁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표를 표기함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성, 전문성, 투명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또한, 복지정책실 소관의 수탁기관은 당초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되지 못하고 단지 운영 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,
- 복지정책실은 앞으로 구체적인 목적과 중장기, 단기 등의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사무를 위탁하여, 운영평가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달성 등 위탁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참 고 1

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(예시)

| 심 사 항 목 | 배점(100) |
|--|---------|
| 수탁기관 운영·관리 적정성 | 30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-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○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사자 정원관리,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- 근로조건, 정규직 비율,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○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, 재정능력 -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| |
| 사업수행 능력(운영실적의 적정성) | 50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○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 사업·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-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○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| |
|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| 20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, 타당성, 이행가능성 등 ○ 사업계획의 적합성,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의 전문성, 실행가능성, 기대효과 등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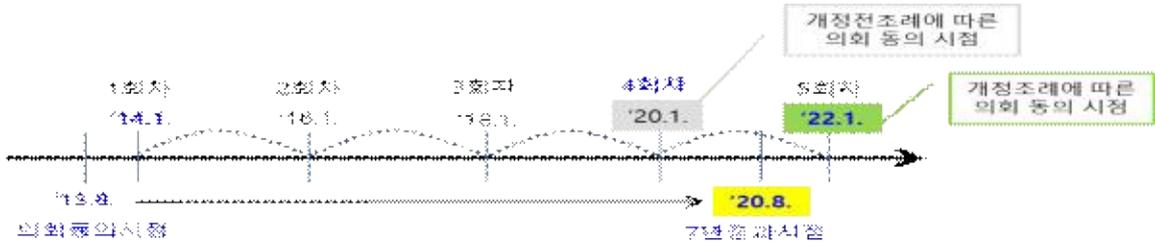
※ 전체 배점(100점)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

※ 종합성과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제공

[참고] 의회 동의 시점 예시

①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

[위탁기간 2년 단위 사업] '13.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, '14.1월에 개시한 2년 단위 위탁사업 ⇒ '13.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'20.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·재계약('22.1.~)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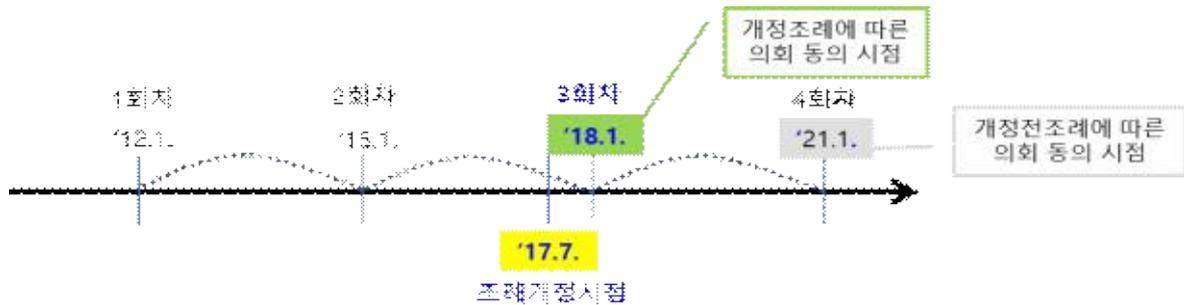


[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] '14.8월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, '15.9월에 개시한 3년 단위 위탁사업 ⇒ '14.8월에 의회 동의 후 7년이 경과한 '21.8월 이후 도래하는 재위탁·재계약('21.9.~)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



②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

[위탁기간 3년 단위 사업] 의회 동의 규정 신설('12.3.)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('12.1.)하여 그동안 한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3년 단위 위탁사업 ⇒ 조례개정('17.7.)으로 재위탁·재계약('18.1.~) 개시 전에 의회 동의 필요



VI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II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IX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영등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97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영등포역 일대는 대표적인 노숙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뢰 권한을 가진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음
- 나. 영등포역 인근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,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
- 다. '19.12.31. 민간위탁 기한이 만료되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“시립 영등포보현의집”의 기능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, 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업명 : 영등포종합지원센터 운영 (신규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
- 설립일 : 2020. 1. 1.
- 규모 : 대지 2,342㎡, 건물 2,784.8㎡(지하2층, 지상3층)
- 위탁법인 : 공개모집
- 운영인력 : 37명 (센터장 1명 외 36명) 내외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4.12.31.(5년)
 - 위탁사무
 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(일시보호시설 포함)
 - 거리노숙인 상담 및 목욕, 세탁, 이·미용 등 기초편의서비스 제공
 - 영등포 무료진료소 운영 및 의료지원
 - 거리상담 활동 및 응급구호 사업, 주거 및 일자리 연계
 - 위탁시설의 재산관리,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
 - 위탁운영 예산 : 2,425백만원
 -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: 2,100백만원
 - 무료진료소 : 325백만원
- ※ '19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예산 : 2,266백만원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노숙인 종합지원센터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(수탁기관 선정)

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들에게 임시적인 잠자리 및 기초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, 거리상담 활동, 응급구호, 무료 진료소 운영,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진행함.
- 거리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·자립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

- '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안건 상정('19.7.15.)
-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노숙인 종합지원센터)

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1조,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·의료·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
2.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
3. 복지서비스 이력관리
4. 심리상담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(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)

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, 협의 및 결정
2.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
3.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고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활지원과 자활지원팀 이진산(☎ 2133-7484)